

# 2023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

## 추가경정예산안

# 검 토 보 고

#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878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0일
4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### II. 추가경정예산안 규모

#### 1. 세입예산안

-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8천 7백만원 대비 7억 7백만원이 증가(145.3%)한 11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.

#### <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
세입예산	1,193,761	486,669	707,092	145.3%

## 2. 세출예산안

-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8억 5천 5백만원 대비 5억 6천만원이 증액(2.8%)된 204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.

### <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
세출예산	20,414,555	19,854,555	560,000	2.8%

## 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 1.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- 2023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8천 7백만원 대비 7억 7백만원이 증액(145.3%)된 11억 9천 4백만원이며,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8억 5천 5백만원 대비 5억 6천만원이 증액(2.8%)된 204억 1천 5백만원임.

### <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
세입예산	1,193,761	486,669	707,092	145.3%
세출예산	20,414,555	19,854,555	560,000	2.8%

## 2. 추가경정예산안 내역

### 가. 세입예산안

- 2023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8천 7백만원 대비 7억 7백만원이 증액(145.3%)된 11억 9천 4백만으로, 세외 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에 7억 5천 9백만원, 주차요금수입에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공유재산임대료가 7천만원 감액되었음.

#### <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
계	1,193,761	486,669	707,092	145.3%
경상적세외수입	1,185,103	478,011	707,092	147.9%
공유재산임대료	399,943	469,943	△70,000	△14.9%
주차요금수입	17,820	-	17,820	100.0%
기타사용료	6,503	6,503	-	-
기타사업수입	760,272	1,000	759,272	75,927.2%
기타이자수입	565	565	-	-
임시적세외수입	8,658	8,658	-	-
기타수입	7,351	7,351	-	-
지난연도수입	1,307	1,307	-	-

- 증액된 세입의 세부내용으로는 ▶ ‘에드워드 호퍼 특별전’ 수입금 가 정산액 4억 7천만원, ▶ ‘빛:영국테이트미술관 특별전’ 전시 수입금 최종 정산액 2억 8천 9백만원, ▶ ‘미술아카이브’ 주차장 직영화에 따른 이용객 주차요금수입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주차장 직영화에 따라 당초

위탁운영을 위한 ‘공유재산임대료’ 수입 7천만원을 전액 감추경함.

- ‘에드워드 호퍼 특별전’ 최근 2건 특별전 전시수입금 평균<sup>1)</sup>을 추계한 것으로 보이나, 전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 편성을 위해 가정산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됨.
- ‘빛:영국테이트미술관 특별전’은 당초 전시 종료 후 세외수입 정산 계획을 수립하였으나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따른 해외 운송비 급등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, 최종적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이 년도말 결정되면서 최종적인 전시 지출액 정산이 늦어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올해 세입으로 처리한 것임.
- ‘미술아카이브’ 주차요금수입은 당초 미술아카이브의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였으나, 주차면 수가 적고, 낮은 급지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이 소규모로 인해 위탁운영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, 이에 따라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임.

## 나. 세출예산안

- 2023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8억 5천 5백만원 대비 5억 6천만원이 증액(2.8%)된 204억 1천 5백만으로, 시립미술관 유지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과 공공운영비(전기,가스요금 등) 1억 6천만원임.

---

1) ‘데이비드 호크니’: 697,068천원+‘빛: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’: 289,272천원= 493,170천원

## <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
계	20,414,555	19,854,555	560,000	2.8%
행정운영경비	1,995,983	1,835,983	160,000	8.7%
기본경비	1,995,983	1,835,983	160,000	8.7%
사업비	18,418,572	18,018,572	400,000	2.2%
시립미술관 유지관리	2,633,385	2,233,385	400,000	17.9%

### 다. 세부사업별 검토

#### 1) 시립미술관 유지관리(사업별설명서 2403쪽)

- 이 사업은 시립미술관 전시동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물 전면 보수·보강, 단열·공조시스템 설치와 공간 재배치를 위해 기정예산 22억 3천 3백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(17.9%)된 26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됨.
-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은 2002년 5월 개관 이후 2018년 3월 대규모 시설 보수를 한차례 진행한 뒤에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며, 시민들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제공과 전시 및 소장작품 보호를 위해 본관의 증·개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설계 용역(4억원) 사업임.
- 서울시는 올해 2월 미술관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공간별 세부 활용계획 등을 사업계획을 보완 후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실시 설계 전에 2단계 심사 추진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음.

- 또한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3조제2항<sup>2)</sup>에 따라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뢰하여, 올해 4월에 운영방식(운영주체) 항목에서 ‘적정’ 의견을 받은바 있음.
- 이 사업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1항<sup>3)</sup>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제1항<sup>4)</sup>에 따라 추경안 제출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.
- 시립미술관은 오는 2023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받을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, 공유재산 심의 전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삭감의 필요성이 있음.
- 또한 2022년도에도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운영 종합감사에서 서소문 본관 3층 공간에서 발생한 「공유재산법」상 위법 상태를 해소하라는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처분을 통보받은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전례가 있음.

2) 제23조(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)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(이하 “공공건축지원센터등”이라 한다)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.

3) 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4)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## 2) 공공운영비

- 이 사업은 미술관의 안정적인 시설유지를 위한 전기·가스요금을 집행하기 위해 당초 18억 3천 6백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이 증액(8.7%)된 19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됨.
- 에드워드 호퍼 특별전 등을 위해 추가장비와 가동시간 확대가 예상되고, 전기요금의 경우 22년에는 총 19.3원/kWh 인상된대 이어 23년 2분기까지 총 21.1원/kWh이 인상되었으며, 가스요금의 경우 22년에는 총 5.47원/MJ 인상된대 이어 23년 2분기까지 총 1.04원/MJ이 인상되었음.
-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공공운영비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되나, ‘에드워드 호퍼 특별전’의 경우 2021.5.11. 미국 휘트니미술관과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대여 작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전 시설의 조도, 온도, 습도 및 유지시간을 명시한바<sup>5)</sup>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할 사안임.

---

5) 조도: 250lux 초과금지, 최대 80-100lux 유지, 일부 작품에 대해선 50-80lux 유지  
온도: 화씨 70-75도(섭씨 21-24도)에서 ±2도 유지  
습도: 45-55%에서 ±5%를 24시간 동안 유지